

[변경대비표]

1. 펀드명 : 타임폴리오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

2. 작성기준일 : 2025.01.08

3. 정정사유 :

-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
- 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(최근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→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(97.5% Var모형사용))
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(2024.01.25 시행)
- 소득세법 제57조의2 및 법인세법 제57조의2 개정사항 반영(2025.01.01 시행)
- 집합투자업자 주소지 이전
- 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34조 제2항 반영 보완

4. 효력발생일 : 2025.02.07

<신탁계약서>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집합투자업자 주소지	주소지 이전	집합투자업자 :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 길 24	집합투자업자 :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
제 21 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	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 34 조 제 2 항 반영 보완	①신탁업자는 ---요구해야 한다. <추가>	①신탁업자는 --요구해야 한다. 다만, 신탁업자가 정보를 지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.

<일괄신고서>

항 목	정정 요구·명령 관련 여부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	아니오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4.01.25)	7. 집합투자증권은 ----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, 특히 「예금자보호법」의 적용을 받는 ----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.	7. 집합투자증권은 ----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삭제> 보호되지 아니하며, 특히 「예금자보호법」의 적용을 받는 ----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삭제>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.
요약정보				
투자위험등급	아니오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4.01.25)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---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삭제>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---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투자비용	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업데이트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				

운용전문인력				
투자자 유의사항	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4.01.25)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---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삭제>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---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주요투자위험 - 원본손실위험	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4.01.25)	투자신탁의 ---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, 특히 ---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	투자신탁의 ---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삭제> 보호되지 아니하며, 특히 ---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삭제>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.
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아니오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업데이트
4. 집합투자업자 가. 회사의 개요		주소지 이전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, 19층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, 16층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업데이트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4.01.25)	또한, 이 투자신탁은 ---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.	또한, 이 투자신탁은 ---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. 일반위험	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4.01.25)	투자신탁의 ---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 <생략>	투자신탁의 ---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삭제> 보호되지 아니하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삭제>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. <생략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	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→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(97.5% Var 모형사용))	■ 수익률 변동성 기준 <변경 전 1>	(3) 수익률 변동성 기준 (설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) <변경 후 1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업데이트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·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		소득세법 제 57조의 2 및 법인세법 제 57조의 2 개정사항 반영(2025.01.01 시행)	<추가> 다만,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 환급세액 =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* *환급비율 : (과세대상소득금액/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) 단, 환급비율 > 1 이면 1, 환급비율 < 0 이면 0 으로 함	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, 원천징수무자(판매회사 등)가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. (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) <삭제>
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아니오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업데이트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		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			

제 4 부. 집합투자지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	아니오	주소지 이전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, 19 층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, 16 층
	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업데이트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 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업데이트
2.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) 집합투자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 나. 주요업무	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 34 조 제 2 항 반영 보완	(2)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② 집합투자재산--요구하여야 합니다. <추가>	(2)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② 집합투자재산--요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신탁업자가 정보를 지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.	

<변경 전 1>

■ 수익률 변동성 기준

위험등급	분류기준	표준편차
1	매우 높은 위험	25% 초과
2	높은 위험	15% 초과 25% 이하
3	다소 높은 위험	10% 초과 15% 이하
4	보통 위험	5% 초과 10% 이하
5	낮은 위험	0.5% 초과 5% 이하
6	매우 낮은 위험	0.5% 이하

1. “수익률 변동성 기준”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지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마다 재산정하며,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<변경 후 1>

(2) 투자위험등급 변경 내역

변경일	위험등급	변경사유

(3) 수익률 변동성 기준 (설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)

위험등급	분류기준	97.5% VaR
1	매우 높은 위험	50% 초과
2	높은 위험	50% 이하
3	다소 높은 위험	30% 이하
4	보통 위험	20% 이하
5	낮은 위험	10% 이하
6	매우 낮은 위험	1% 이하

1) “수익률 변동성 기준”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지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시 마다 재산정하며,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) “97.5% VaR”은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.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($\sqrt{250}$)를 곱해 산출하며, VaR(Value at Risk)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. 상기 표상 VaR값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(신뢰구간 97.5%)을 의미합니다.